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경찰공무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2,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4, 제13호의5, 제13호의6, 제16호 및 제17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훈격 구분란 중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도”를 “경찰대학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수사연수원장 · 경찰병원장 · 시 · 도경찰청장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징계 · 경고 구분란 기호(-) 중 “경찰대학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수사연수원장 · 경찰병원장 · 지방경찰청장”을 “경찰대학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수사연수원장 · 경찰병원장 · 시 · 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 · 경찰대학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수사연수원장 · 경찰병원장”을 “시 · 도경찰청장 · 경찰대학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수사연수원장 · 경찰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 · 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경찰청 · 지방경찰청”을 “경찰청, 시 · 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을 “시 · 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24조”을 “「경찰공무원법」 제30조”로 한다.

제4조(「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제67조제2항,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

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제95조,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0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0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0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제111조제3항, 제1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의2제4항제4호, 제12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5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2, 별표 17의2, 별표 26, 별표 28, 별표 30, 별표 34 및 별표 35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의2 서식, 별지 제55호 서식, 별지 제59호 서식, 별지 제80호 서식,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 별지 제85호 서식, 별지 제87호 서식, 별지 제88호 서식, 별지 제90호 서식, 별지 제92호 서식, 별지 제94호 서식, 별지 제95호 서식, 별지 제98호 서식, 별지 제99호 서식, 별지 제100호 서식, 별지 제102호 서식, 별지 제103호 서식, 별지 제104호 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16호 서식, 별지 제117호 서식, 별지 제119호 서식, 별지 제121호 서식, 별지 제123호 서식, 별지 제130호 서식, 별지 제132호 서식, 별지 제133호 서식, 별지 제141호 서식, 별지 제142호 서식, 별지 제143호 서식, 별지 제145호 서식, 별지 제146호 서식, 별지 제150호 서식, 별지 제151호 서식, 별지 제152호 서식, 별지 제153호 서식, 별지 제154호 서식, 별지 제155호 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26조의2제4항제1호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기

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기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
고, 처리절차란 중 “(지방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
고, 처리절차란 중 “(경찰서·지방청·경찰청)”을 각각 “(경찰서·시·도경
찰청·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
고, 처리절차란 중 “(경찰서·지방청·경찰청)”을 각각 “(경찰서·시·도경
찰청·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
고, 처리절차란 중 “(지방청·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경찰청)”으
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지방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3조제6항,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제6항 중 “지방경찰 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3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

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및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고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 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서

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 서식 앞쪽 신고인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 서식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시·도경찰청·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

다.

별지 제19호 서식 앞쪽 신고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란 중 “(지방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신고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 서식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 서식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신청인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 서식 신고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 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 서식 앞쪽 기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허가신청 등) ① ----- ----- ----- ----- ----- ----- ----- ----- ----- ----- ----- ----- ----- ----- ----- ----- <u>시·도경찰청장</u> ----- <u>시·도경찰청</u> ----- ----- ----- ----- ----- ----- ----- <u>시·도경찰청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

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
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
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
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의 실시 등) ① ~ ⑤ (생
략)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

시·도경찰청
장 ----- 시·도경찰청 ----

시·도경찰청장----
-----.

② -----
----- 시·도경찰청장 -----

③ 시·도경찰청장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의 실시 등) ① ~ ⑤ (생
략)

⑥ 시·도경찰청장 -----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생략)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①
(생략)

1. ~ 6. (생략)

7.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의 실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경찰청장-----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①
(생략)

1. ~ 6. (생략)

7. -----

시

.도경찰청장-----

8. (생략)

② ~ ⑥ (생략)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① -----

시·도경찰청장
-----.

② -----

시·도경찰청장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 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④ (생략)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① -----

-----시·도경찰청장-----.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
지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illegible]

③ -----

----- 시·도경찰청장

----- 시·도
경찰청장

-----.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
지의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
음)

[illegible]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u>지방경찰청</u>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 ----- ----- ----- ----- ----- ----- ----- ----- ----- <u>시·도경찰청</u> ----- ----- -----.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u>지방경찰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 ----- ----- ----- ----- ----- ----- ----- ----- <u>시·도경찰청장</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생략)

② 경찰서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도경찰청장-----
-----.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경찰공무원법」 제7		-----「경찰공무원법」 제7
		조제1항-----		조제1항-----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		-----
		-----		-----
		-----		-----
		-----「경		-----「경
		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		-----
		-----		-----
		-----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 <u>시 · 도경찰청</u> -----		-- <u>시 · 도경찰청</u> -----
		-----		-----
		-----		-----
		-----		-----
		-----		-----

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② (생략)

③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특별경비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및 22경찰경호대를 말한다.

④·⑤ (생략)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②·③ (생략)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② (생략)

③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경찰청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

경찰청, 시·도경찰청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 -----

라 한다)의 장이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
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
시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자격증명서 1통(법 제8조제3
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 10. (생략)

④·⑤ (생략)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②
(생략)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7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
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2
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
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0조제3
항제2호-----

8. ~ 10.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조-----

-----.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
0조제3항-----

-----.

1. · 2. (생 략)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지방경찰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 ----- ----- ----- ----- ----- ----- ----- ----- ----- ----- <u>시·도경찰청장</u> ----- <u>청장</u> -----.
② <u>지방경찰청장</u> 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u>시·도경찰청장</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를 <u>지방경찰청장</u> 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에 헐	④----- ----- ----- ----- ----- ----- ----- <u>시·도경찰청장</u> ----- <u>청장</u> ----- -----.

어 못쓰게 된 지정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긴급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자동차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

-----.

⑤ -----
-----시·도경찰청장-----

-----.

제4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경찰청장-----

-----.

1. 2.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 -----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제6조(신호기)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지방경찰청

-----"
시·도경찰청장 -----
-----.

제6조(신호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장-----

-----.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 시·도경찰청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 -----
-----시·도경찰청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
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
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지
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
다.

제15조(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

장 -----

시·도경찰청장 -----

-----.

④시·도경찰청장 -----

-----.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
·도경찰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의 설치 장소) -----

시·도경찰청장, -----

--.

제15조(차로의 설치) ① 시·도경

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 신청 등) ① (생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받은 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생략)

1. ~ 3. (생략)

②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

찰청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

-----.

1. (현행과 같음)

2.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시·도경찰청장-----

-----.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I.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
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
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2. (생 략)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
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
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
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
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
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
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
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① ~
③ (생 략)

④국가경찰공무원이 제3항에 따
른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를 교

----- 시·도경찰청장-----

-----.

1. 2. (생 략)

③ -----시·도경찰청장

-----.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
도경찰청장-----.

제27조(정비불량표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
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국가경찰공무원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
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
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
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
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
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한다)을 제외한 경찰공무원

----- 시·도경찰청장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 시·도경찰청장-----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
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6.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시·도 경 찰 청 장-----
-----.

1. ~ 6. (현행과 같음)

[illegible]

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신
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교통안전교
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
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
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
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생 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
려면 먼저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경찰청장-----

-----.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
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

시·도경찰청장-----
---.

제51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

전통지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교통안전
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
영 정지를 명한 사실을 통지하
고 별지 제40호서식의 교통안전
교육기관 행정처분대장에 그 사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
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
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
전교육기관의 출입구·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
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
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
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

③ -----

----- 시·도경찰청장-----
-----.

④ 시·도경찰청장-----

-----.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 시·도경찰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 필요 조건을 붙이거나 바꿀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

-----.

② -----
-----시·도경찰청장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경찰청장-----

-----.

⑤ -----
시·도경찰청장-----

-----.

⑥ 시·도경찰청장-----

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 (생략)

②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 (생략)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

제62조(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도경찰청장-----

-----.

관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제66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이하 "시험관"이라 한다)은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시험관은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이 된다.

② (생략)

1. ~ 5. (생략)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생략)

②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 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

제69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7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
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
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
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
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생 략)

②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85조제2항 및 영 제
8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
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운전면
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고유번호, 발급연도, 연도별 일
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발급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
번호로 한다.

③ (생 략)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도경찰청-----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
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
분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
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
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
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
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
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
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

-----시·도경찰청장
-----.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
분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도경찰청장
-----.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
분 절차) ① 시·도경찰청장 --

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1. 2. (생략)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 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1. 2. (현행과 같음)

④

경찰공무원

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 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범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

-----.

⑤ 경찰공무원-----

-----.

⑥ 시·도경찰청장-----

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

-----.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도경찰청장-----

-----.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

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 시·도경찰청장 -----
-----.

제96조(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 시·도경찰청 -----
-----.

② -----

----- 시·도경찰청장 -----
-----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도경찰청장-----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

----- 시·도경찰청장 -----

-----.

② -----

-----.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
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야 한다.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
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
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
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
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

③ 시·도경찰청장 -----

-----.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

-----시·
도경찰청장-----
--.

1. ~ 10. (현행과 같음)

② -----
---시·도경찰청장-----

--. -----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은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7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0조(변경등록) ① 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운영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변경등록) ① -----

시·도경찰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시·도경찰청장-----

-----.

확인예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자동차운전 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9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 당시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설건축물로서 동항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dashed lines)

1. · 2. (현행과 같음)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

시·도경찰청

장 .

② -----
 --시·도경찰청장-----

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늦어도 기간만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3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 등록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02조(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는 별표 31에 따라 표지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에 따른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 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 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교육용자동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 시·도경찰청장-----.

③ 시·도경찰청장-----.

④-----.

-----, ----- 시·도경찰청장-----.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 10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별 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 ③ (생략)

④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

-----.

1. 2. (현행과 같음)

⑤ 시·도경찰청장-----

-----.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시·도경찰청장-----

년으로 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② (생 략)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
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
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관리
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
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
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
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
다.

1. ~ 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
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시·
도경찰청장-----
--. -----
-----시·도경찰청장-----

--.

1. ~ 13.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
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을 때
 에는 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

A handwriting practice sheet featuring ten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set is designed for tracing practice. The first set includes a solid black dot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dashed line. The tenth set includes a solid black dot at the end of the middle dashed line. The remaining eight sets are empty for independent practice.

1. ~ 4. (현행과 같음)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

시·도경찰청장-----

-----.

② -----

----- 시·도경
찰청장-----.

③ 시·도경찰청장-----

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

-----시·도경찰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시·도경찰청장-----

-----.

③ 시·도경찰청장-----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운영
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
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
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
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
임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④ 시·도경찰청장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②시·도경찰청장-----

[illegible]

제120조(강사등의 선임 등) ① --

--
--
--
--
--
--
--
시·도경찰청장-----
-. -----

-----.

② 시·도경찰청장-----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12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 (생략)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

③-----

-----시·도경찰청장-----

-----.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시·도경찰청장-----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①·②
(생략)

③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도

-----.

③ 시·도경찰청장-----

-----.

제124조(기능검정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장-----.

④ 시·도경찰청장-----

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3.(생략)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 ⑦ (생략)

-----.

-----.

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시·도경찰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장-----.

④ -----

-----시·도경찰청장-----
-----.

1. 시·도경찰청 -----

2. 3.(현행과 같음)

4. -----
-----시·도경찰청장-----

⑤ ~ ⑦ (현행과 같음)

②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

② 경찰공무원-----

한 때에는 그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별지 제
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
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
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
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
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
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
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
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으
려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
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에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
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

-----경찰공무원

-----.

③-----

-----시·도경찰
청장-----
-----.

제138조(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 ① -----

-----시·도경찰청장
-----.

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36조
제1항에 따른 표시장수여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
처리) ① 지방경찰청장·경찰서
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
하여 민원인이 문서·서면·서
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
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
다.

②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
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는 이를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

-----.

② 시·도경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
처리) ① 시·도경찰청장-----

-----.

② 시·도경찰청장-----

-----.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생 략)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④ (생 략)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 (생 략)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② (생략) ③ <u>지방경찰청장</u>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경찰청장</u> -----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 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 라 한다)을 거쳐 <u>지방경찰청장</u>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①----- ----- ----- ----- ----- ----- <u>시·도경찰청장</u> ----- ----- --.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행정처분대상등) ① (생 략)	제27조(행정처분대상등) ① (현행 과 같음)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주민 등록번호·취소사유·취소일자 등을 다른 <u>지방경찰청장</u> 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 ----- ----- ----- <u>시·도경찰청장</u> -----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u>지방경찰청장</u>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 <u>시·도경찰청장</u> ----- ----- -----.	⑤ ----- ----- ----- ----- -----.	⑤ ----- ----- ----- ----- -----.	⑤ ----- ----- ----- ----- -----.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u>지방경찰청장</u>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 ----- -----.	⑥ -----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 ----- -----.	⑥ -----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 ----- -----.	⑥ -----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제4조(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시·도경찰청장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시·도경찰청 -----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

② (생 략)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 략)

③ 시장등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도경찰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찰청장-----

-----.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

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도

<u>경찰청장</u>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시장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u>지방경찰청장</u>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u>경찰청장</u>-----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u>시·도경찰청장</u> ----- -----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u>지방경찰청장</u> (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 ----- <u>시·도경찰청장</u> ----- ----- -----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u>지방경찰청장</u> 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 -----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u>지방경찰청장</u>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u>시·도경찰청장</u> ----- ----- ----- ----- ----- ----- ----- -----.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생략)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8.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u>지방경찰청장</u>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 ② (생 략) ③ <u>지방경찰청장</u>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추 두어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제18조(표창) <u>지방경찰청장</u>,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u>시·도경찰청장</u>----- -----<u>청장</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경찰청장</u>----- ----- --.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표창) <u>시·도경찰청장</u>, ----- ----- -----. 1. ~ 2. (현행과 같음)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경찰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허가신청) ①----- ----- ----- ----- ----- ----- ----- ----- ----- ----- ----- <u>시·도경찰청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u>지방경찰청장</u> (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③----- ----- <u>시·도경찰청장</u> ----- ----- ----- ----- ----- ----- -----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 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안전교육계획서
5.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①-----

----- 시

·도경찰청장-----

--.

1. -----

--

2. -----

3. -----

4. -----

5. -----

②-----

-----시·도경찰청

장-----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

시·도경찰청장-----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방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장-----

-----.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①-----

---- 시·도경찰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

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
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
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
경허가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
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
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 ⑥ (생략)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
지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
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시 · 도경찰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

----- 시

• 도경찰청장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
지허가신청) ①-----

----- 시 · 도경찰청장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방법)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시 · 도경찰청장 -----
 ----- 시 · 도경
찰청장-----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
람에 대한 총포·도검·석공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①-----

시·도경찰청
장-----.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
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
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별표 10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지방경
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
여야 한다.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
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20일전에 교육의 일시
· 장소 그 밖의 교육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
한 경우로서 항시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
예고) ----- 시·도
경찰청장 -----

-----.

제32조(교육의 과목 및 강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경
찰청장 -----
-----.

제33조(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① 시·도경찰청장 -----

-----.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총포·석공의 소지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 ② (생략)

③ 시험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서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생략)

② -----

-----시·도경찰

청장 -----

-----.

-----.

③ -----

--- 시·도경찰청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경찰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 신청)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면허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영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 신청) ①-----

---- 시·도경찰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면허의 신청) ①-----

-- 시·도경찰청장-----
-----.

②-----

---. ----- 시·도경찰청장---

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3. (생략)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3. (현행과 같음)

③ 시·도경찰청장-----

-----.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① -----

-----.

-----시·도경찰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경찰청장</u>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u>시·도경찰청장</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연 락 처	(02) 3150 - 0174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31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2931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연 락 처	(02) 3150 - 2135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
경찰청 생활질서과	
연 락 처	(02) 3150 - 2147(2547)
경찰청 정보1과	
연 락 처	(02) 3150 - 1450
경찰청 대테러과	
연 락 처	(02) 3150 - 1226